

## 사용자 및 품목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

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대상 품목은 다음을 제외한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의 물품과 소프트웨어(군사 목적의 경우 제외)를 말한다.

※ 별표 2의 제10부(원자력 전용품목) 및 별표 3(군용물자품목)의 전략물자는 포괄수출허가 대상이 아님

### 1. 별표 2의 전략물자 중 초민감품목

2.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체 관련 품목(Category I) : 7A003, 7A117, 7B001, 7B003, 7B103.a, 7B103.b, 7D101, 7D104, 9A004, 9A005, 9A007, 9A008.d, 9A009, 9A012.a, 9A104, 9A105.a, 9A106.c, 9A108.c, 9A109, 9A116, 9A119, 9B115, 9B116, 9D101, 9D104, 9D105의 품목 중 사거리 300km, 탑재중량 500kg의 완성 운반체나 완성 하부시스템을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되었으며 MTCR Annex의 품목1 및 품목2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것에 한한다.